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찰청장 장관급으로 승격 등〉

■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34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청래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04. 17.
3. 회 부 일 : 2025. 04.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신속·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청장의 봉급과 보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경찰청장) ① ~ ⑩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4조(경찰청장)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급 공무원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u> <u>⑫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u>

먼저, 경찰청장 보수 장관급 격상 관련하여,

현행 「경찰법」 제11조제1항¹⁾은 경찰청장을 치안총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치안총감은 차관급의 대우²⁾를

1) 「경찰법」 제11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2) 장관·장관급과 차관·차관급 연봉 비교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별표 32]	
장관 및 장관급	149,692천원
차관 및 차관급(치안총감 해당)	145,378천원

받음.

개정안은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과 균형을 맞추고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됨.

이는 13만 명이 넘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동기 부여를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찰총장 등 타 수사기관과의 위상 균형이 맞춰짐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고, 국제 범죄 대응과 협력에서도 외국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공조를 통해 글로벌 치안 역량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다만, 동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드러나듯 경찰청장의 봉급과 보수의 장관급 격상은 향후 치안총감 이하 계급에 대한 연쇄적인 봉급과 보수 또는 직급 인상 수요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관련하여,

개정안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현행 국무회의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대한민국헌법」 제88조제2항³⁾은 국무회의 구성원을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3) 「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위원으로 하고, 「정부조직법」 제13조제1항⁴⁾은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명시하여 국무회의의 출석·발언권을 부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한국은행 총재는 개별 법률⁵⁾에 의해 국무회의의 출석·발언권이 부여되고, 「국무회의 규정」 제8조제1항⁶⁾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시장⁷⁾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함.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정부조직법」 제26조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4) 「정부조직법」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제4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17조제4항, 「한국은행법」 제90조제1항

6) 「국무회의 규정」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⁷⁾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무회의의 관련 법령에 따른 구성원, 출석·발언권자 및 배석자>

	대한민국 헌법	정부조직법	개별법률	국무회의규정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발언권		<u>국무조정실장</u> <u>국가보훈처장</u> <u>인사혁신처장</u> <u>법제처장</u> <u>식품의약품안전처장</u>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한국은행 총재	
배석(출석·발언권 X)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시장

※ 밑줄에 해당하는 자는 「국무회의의 규정」 제8조에 따라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함께 규정되어 있음.

정리하자면 국무회에서 출석·발언권을 갖는 자는 행정각부의 장관과 국무총리 소속 처(處)의 장⁷⁾이고, 차관 및 차관급 공직자 또는 행정각부 소속 청(廳)의 장은 원칙적으로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며, 해당 기관이 소속하고 있는 장관(국무위원 등)이 관련 사무에 대해 발언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차관급 공무원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하여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되 발언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음.

7)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의 경우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이고 경찰청장은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바, 관련 법령에서 경찰청장의 국무회의에서의 출석·발언권 뿐 아니라 배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무회의 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해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출석·발언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⁸⁾

동 개정안에 따라 경찰청장의 봉급 및 보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경우 그 직급 역시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장관급인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부여는 가능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경찰청장이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 경우라도,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34조제5항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인 바, 국무회의에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과 소속기관인 경찰청장이 동시에 발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¹⁰⁾,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수사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도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을 배제해왔던 관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2020년 3월 3일 제9회 국무회의에 경찰청장이 출석하여 발언한 사례가 있음.

9)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10)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무회의 규정」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경찰청은 치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며, 이는 현장 경찰관의 자긍심 제고와 치안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청장의 국무회의 참여는 치안 관련 사안의 신속한 정책 반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수용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자료]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관련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62,581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49,692
국무총리	203,565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47,532
부총리 및 감사원장	154,010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u>145,378</u>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관련[별표 33])

5.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 · 소방정감 공무원	128,989	85,983
치안감 · 소방감 공무원	119,212	79,436
경무관 · 소방준감 공무원	110,826	74,448
총경 · 소방정 공무원	101,384	61,134
경정 · 소방령 공무원	83,954	42,021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45,378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